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64 발의연월일: 2022. 11. 24.

발 의 자:조경태·김도읍·김미애

김희곤 • 백종헌 • 서병수

안병길 · 이주환 · 이헌승

전봉민 · 정동만 · 황보승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거리로 몰려나온 수만명의 인파들로 인해 158명이 압사되어 사망하는(11. 24. 현재기준) 참사가 발생하였음.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임의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참사 발생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 및 행사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⑤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 ④ (생 략)	전관리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
	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u>⑥</u> <u>제5항</u>
정에 따른 지역축제 <u>안전관리</u>	<u>안전관리계</u>
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	획 및 행사안전관리계획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